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2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박지혜 · 최민희 · 위성곤
허영 · 안도걸 · 권향엽
박정현 · 최혁진 · 이주희
이병진 · 이재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위하여 적절한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우선 접속의 절차, 기준 및 기술적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관리 의무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관리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위하여 적 정한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우 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공급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 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경 우에는-----.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u>제4항제1호</u> 및 제2호에 따라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⑥ <u>제5항제1호</u>----- ----- ----- ----- -----. ⑦ <u>제3항에 따른 우선 접속의 절차, 기준 및 기술적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